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3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.

- 1)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유아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
<p>가. 법 제28조의2 를 위반하여 유 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</p>	<p>법 제35조 제1항</p>	<p>300</p>	<p>400</p>	<p>500</p>
<p>나. 삭제 <2021. 7. 13.></p>				
<p>다. 법 제17조제1 항에 따른 건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. 다만, 유치원의 장이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 게 3회 이상 안 내(건강검진결 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 다)한 경우는 제 외한다.</p>	<p>법 제35조 제2항</p>	<p>100</p>	<p>200</p>	<p>300</p>
<p>라. 법 제17조의3 에 따른 응급조 치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35조 제2항</p>	<p>100</p>	<p>200</p>	<p>300</p>